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10 -
--------	--------	--------

수 신 : 거창군의회 의장

2010. 07. .

제 목 : 규칙안 제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제안자 : 거창군의회운영위원장 이 성 복 (인)

의안번호	제 2010 - 호
의결연월일	2010. 07. . (제 168 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
제안연월일	2010. 07. 12.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2010- 호
----------	----------

제안연월일 2010년 7월 12일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직렬과 직급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제1항의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의회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직렬, 직급을 개정 하고자 함.

○ 행정 ⇒ 행정 · 세무(안 제3조관련 별표)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안 제3조관련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라. 기타: 해당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의 직렬란 중 “행정□□을
“행정·세무□□로 하며, 직급란 중□□지방행정주사□□를□□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사무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 사무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 업·시설	지방행정· 농업·시설 사무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 업·시설	지방행정· 농업·시설 사무관
의회운영위 원회·특별 위원회	전문위원	<u>행정</u>	<u>지방행정 주사</u>	의회운영 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u>행정· 세무</u>	<u>지방행정 주사· 지방세무주사</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43호, 2010. 6.30,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 4조 (직급별 정원) (신설 2008.12.3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1[시행 2010. 3.19] [법률 제 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개정 2008.12.31)

제 2조 (직급·직렬별 정원) (개정 2008.12.3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 2008.11.3, 2008.12.31)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 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02.10.2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08.9.23>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관련 의원에 대한 제공
3.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 보좌
5. 군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3>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 정	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시설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행 정	지방행정주사